

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중 “수수료를 납부하게”를 “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게”로 하고, 제2항 제4호 “계기 인영번호”를 “계기고유 인영번호”로 한다.

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 2 (계기관리 공무원의 지정) 구청장은 계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구 본청은 계기사용 부서의 실·과장으로, 동은 사무장으로 하여금 책임관리토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계기에 의하여 인영할 수입증지의 종류는 예외로 한다.

③계기에 의하여 인영될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(별표 3)과 같다.

제2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구 본청은 계기관리부서 분임징수관 및 동은 수입금 출납원 책임하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,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24조 제1항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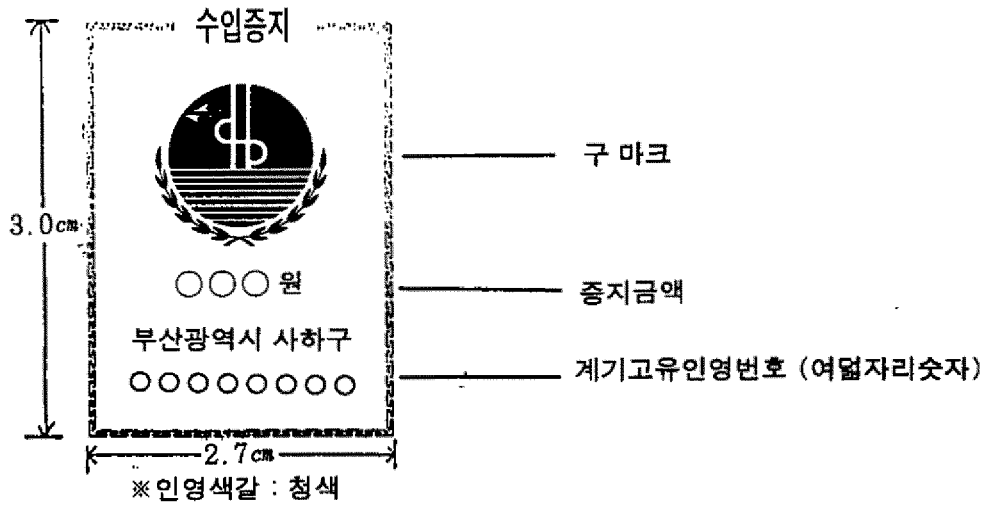
(별지 3) 및 (별지 제10호서식)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3)

계기인영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



신.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 (안)
제5조(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)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(이하 "계기"라 한다)에 의하여 <u>수수료를 납부하게</u> 할 수 있다.		제5조(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)①.....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게	
②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으로 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, 계기의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.		②.....	
1~3 (생략)		1-3(현행과 같음)	
4. <u>계기 인영번호</u>		4. <u>계기 고유 인영번호</u>	
(신설)		<u>제5조의 2 (계기관리 공무원의 지정)구청장은 계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구 본청은 계기사용부서의 실, 과장으로 동은 사무장으로 하여금 책임관리토록 하여야 한다.</u>	
제6조 (증지의 종류, 규격 및 모양)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, 40원권, 50원권, 60원권, 100원권, 200원권, 300원권, 500원권, 1,000원권, 2,000원권, 5,000원권, 10,000원권으로 한다.		6조 (증지의 종류, 규격 및 모양) ①.....	
(신설)		<u>단, 계기에 의하여 인영할 수입증지의 종류는 예외로 한다.</u>	
②(생략)		②(현행과 같음)	
(신설)		③ <u>계기에 의하여 인영될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(별표 3)과 같다.</u>	

현행	개정안
제21조 (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) ①(생략) ②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, 계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	제21조 (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구 본청은 계기관리부서 분임징수관 및 동은 수입금 출납원 책임하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, 계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제24조 (증지의소인) ①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. (신설)	제24조 (증지의 소인) ①..... 다만, 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.
(신 설) <u>(별지제10호서식)(별지와 같음)</u>	(별지 3) (별지와 같음) <u>(별지제10호서식)(별지와 같음)</u>

(별표 3)

계기인영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

